

지식재산권관리규정

□ 제정 : 2013. 5. 15. □ 개정 : 2019. 6. 18.
□ 개정 : 2018. 8. 31. □ 개정 : 2020. 3.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및 직원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노하우 등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전임교원, 초빙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이하 “교원 및 직원”라 한다) 등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시설·설비·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으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원 및 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5. “실시보상”이라 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교원 및 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 6 “기술이전기여자”라 함은 지식재산권 보유자, 또는 양수 희망자를 발굴하여 기술이전계약에 이르게 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한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실시보상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기술이전 전담조직

제4조(전담조직) ① 본교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는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전담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2-37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1. 직무발명의 승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관리
3.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활용
4. 지식재산권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5.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6.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의 경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원 및 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삭제(2019.05.30.)

제 6 조(지식재산권의 귀속) 산학협력단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 3 장 발명의 신고 및 출원

제7조(발명의 신고의무) 교원 및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선행기술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4. 특허요약정보(별지 제4호 서식)
5.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별지 제 5호 서식)

제8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승계 결정의 통지) ①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특허 출원지원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②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된다. 다만, 발명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발명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권리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출원 및 제한)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발명에 대해서 특허출원지원을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발명자는 직무발명으로 산학협력단에 신고한 발명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으로 된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특허출원 비용) 산학협력단은 제9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특허의 유지)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등록 후 5년차까지는 산학협력단의 비용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의 유지에 대하여서는 발명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 4 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3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본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총장이 본교 교원 및 직원 및 외부기관에서 임명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 단장이 된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및 직원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및 승계여부
2.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해외 출원 여부
3. 지식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
4. 지식재산권 이전 수입금의 배분 및 운용계획
5.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6.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개폐
7.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위원회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 5 장 실시료

제18조(실시료 평가 등)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위해 공인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와 실시예정자가 협의하여 실시료 계약조건을 설정한 후 단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19조(직무발명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으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등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출원, 등록, 유지 및 기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전액(이하 “순이익”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순이익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그 이익의 50%
 2. 순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10,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1호의 해당금액과 순이익 1,000만원 초과분 이익의 60%
 3. 순이익이 10,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2호의 해당금액과 10,000만원 초과분 이익의 50%
- ②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 ③ 산학협력단은 교원 및 직원이 제1항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익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해당 기술이전기여자에게 보상금으로 산학협력단 지분에서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④ 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실시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에서 지원기관 해당 분을 제외하고 분배한다.

제20조(지급기간 등) ①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개정 : 2020.3.13.>

③ 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그 변경사유를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 허락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22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양도증(권리승계합의서)

양 도 증				
발명의 명 칭				
출원번호	※ 미출원 상태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지분율 (%)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 수 인	성 명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 석 용
	주 소	(18516)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포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본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라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4-2-37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선행기술자료 조사서(국내·외)

선행기술자료 조사서(국내·외)		
1. 산업재산권(관련기술분야 기존특허 등) 조사 ※ 특허청(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 등 이용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2. 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문헌내용 (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별지 제4호] 특허요약정보

특 허 요약 정보 서	
<p>※ 본 발명의 특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본 특허에 대하여 요약</p>	
대표도면	도면의 간단한 설명
<p>※도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별지 제5호] 발명명세서

발 명 명 세 서

1.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 가. [발명의 목적]
 - (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
 -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나. [발명의 구성]
 - (1)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2) [기능 및 작용]
 - (3) [실시예]
 - (4) [기타]
 - 다. [발명의 효과]
4.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 [청구항 2]
 - [청구항 3]
 - .
 - .